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08

발의연월일: 2022. 6. 23.

발 의 자: 안병길·조명희·김선교

박대수 · 강민국 · 권명호

백종헌 • 정점식 • 전봉민

이만희 • 윤재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런데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 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
	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
	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u>정한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
	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
	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